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대상 조서 작성 또는 신문 시 의사소통 전문능력자를 지원>

■ 최보윤·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54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에 대한 신문조서 작성 시 전문지식을 갖춘 법원사무관 등의 조서 작성 의무화	2
2. 장애인의 “통역”을 “의사소통 지원”으로 용어 정비	4
3.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최보운의원 · 서미화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2. 5.
3. 회 부 일: 2024. 12. 6.

II.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48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에 대한 신문조서 작성 시 전문지식을 갖춘 법원사무관 등의 조서 작성 의무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장애인이 신문의 당사자가 된 경우 장애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 ----- ----- ----- -----. <u>이 경우 장애인이 신문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장애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은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진술 또는 신문 받는 경우 통역하게 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장애인이 신문의 당사자인 경우 장애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진술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여 장애인의 진술권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임.

다만, 다음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장애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므로, 전국 80개(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 법원에 분야¹⁾별 1인을 배치할 경우 최소 240명(3분야)에서 최대 1,200명(15분야)까지의 인원을 고용하여야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력 채용이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예산이 필요한 점, 적합한 인력이 없는 경우 재판 지연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15가지 장애를 큰 틀에서 외부장애, 내부(장기)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2. 장애인의 “통역”을 “의사소통 지원”으로 용어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제1편 제14장을 ‘의사소통’으로, 제181조의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을 ‘장애인 의사소통’으로 개정하는 내용임(안 제181조 등).

현행	개정안
第14章 <u>通譯과 翻譯</u> 제181조(<u>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u>)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u>통역하게 할 수 있다.</u>	第14章 <u>의사소통</u> 제181조(<u>장애인의 의사소통</u>) --- ----- ----- ----- <u>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u>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통역을 장애인의 의사소통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의 범위를 “장애인의 의사소통”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게 보다 폭 넓은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통역”이란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 사이에서 뜻이 통하도록 말을 옮겨 줌”을 의미하는 명사이고, “의사소통”이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을 의미하는 명사라고 정의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뜻풀이에 따를 때, 형사소송법 제1편 제14장 및 제181조의 의미는 ‘장애인의 진술을 뜻이 통하도록 옮겨 줌’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통역”으로 명칭하는 것이 적합함.

또한, 형사소송법 제180조의 통역과 제182조의 번역은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자,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를 통역 또는 번역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14장의 명칭을 “의사소통의 지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뜻풀이에 적합할 것으로 보임.

3.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제244조의5제1호 및 제276조의2제1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244조의5, 제27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u>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u> 2. (생략)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 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u>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u> 2. (생략) ② (생략)	----- ----- ----- -----. 1. ----- ----- <u>의사의 결정·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u> 2. (현행과 같음)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 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 ----- ----- ----- ----- ----- -----. 1. ----- ----- <u>의사의 결정·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라는 표현을 “의사의 결정·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을 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때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효과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의사의 결정·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보다 법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는바, 의사 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礙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
-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礙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礙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礙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礙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礙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